

2020년도 실행 예산서

실행예산은 공사의 단위사업별 설계내역 조정 등 세부추진 계획 승인(익년 2~3월)에 따라, 당초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총예산액 범위 내에서 내역조정을 반영해 수립하는 내부방침 계획임

2020. 03. 25



드림파크문화재단

예 산 총 칙

제1조(예산) 2020년도 드림파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예산은 「별지」와 같다.

제2조(인건비 편성) 총 인건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이와 달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집행원칙) 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여된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(지출원인행위 또는 계약)하여야 한다.

② 지출원인행위 담당은 계약대장 및 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,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③ 각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절감 또는 수입의 초과달성 실적이 있을 경우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4조(예산의 과목구조) 재단의 수입·지출예산 과목분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항 : 대분류 사업별
2. 세항 : 중분류(국, 단 소관)별 분류
3. 목 : 성질별 분류
4. 세목 : 내역별 분류

제5조(예산의 전용) 항 내지 목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으며, 세목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관리자가 세목조정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의 초과계리)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집행 및 계리할 수 있다.

1. 퇴직금
2. 감가상각비
3. 세금 및 공과금(법인세 포함)
4. 배상금
5. 기타 법정비용

제7조(추경의 편성) ①각 부서장은 당해예산의 추가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, 근거서류를 첨부 예산관리자에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추경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예산의 이월)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(공고 등)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동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월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예금에 보관하고 이월명세서를 익년 1. 31까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예비비의 사용) 사업수행 상 기 책정된 예산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기책정 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, 다만, 성과 상여금은 예외로 한다.

제10조(예산집행절차) 예산집행절차는 다음과 같다.

계약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상경비 집행의 경우(여비,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)

각 부서장 (부분 예산관리자)	경영지원부장 (예산관리자)	경영지원부장
◦ 지출원인품의서 작성	◦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(집행실적 관리)	◦ 자금지출 (지출부 등재) (지출실적 관리)

계약행위(계약서 작성 생략의 경우 포함)를 수반하는 경비집행의 경우(물품구매, 용역, 공사, 수리, 제조 등)

각 부서장 (부분 예산관리자)	경영지원부장 (예산관리자)	경영지원부장
◦ 물품구매품의서 작성	◦ 계약 체결 ◦ 지출결의서 작성 ◦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(집행실적 관리)	◦ 자금지출 (지출부 등재) (지출실적 관리)

□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의 경우

각 부서	경영지원부	경영지원부	경영지원부
◦ 위탁 사업 급여 관련 자료 작성 (현장근로자 급여계산 등)	◦ 직원급여계산 ◦ 지출원인품의서 작성	◦ 지출결의서 작성 ◦ 지출원인행위부 등재 (집행실적 관리)	◦ 자금지출 (지출부 등재) (지출실적 관리)

제10조(세부기준) 동 예산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「예산편성지침 및 기준」 과 「예산집행지침」 및 SL공사의 「예산편성지침 및 기준」 과 「예산집행지침」 을 준용할 수 있다.

- 붙임서식 : 1. ()월 지출예산 실적보고서
 2. 예산전용요구서
 3. 추가경정 예산요구서
 4. 세목별 증감조서
 5. 지출원인행위부

< 붙임1 >

()월 지출예산 집행실적 보고서

가. 본예산

(단위:천원)

과 목				당초 예산액	증감액	예산현액 (A)	집 행 액 (지출원인행위액)				잔 액 (A-B)	지 출 액		
항	세항	목	세목				전월까지 (누계)	본월분	누계 (B)	비율 (B/A)		전월까지 (누계)	본월분	누 계
계														

나. 사고이월예산(미지급금)

(단위:천원)

과 목				이월액 (A)	지 출 액		
항	세항	목	세목		전월까지 (누계)	본월분	누 계
계							

< 붙임2 >

예산 전용 요구서

(20 년 월 일 현재)

(단위:천원)

과 목				당초 예산액	전용 등 증감액	예산 현액	집행액 (지출원인행위)	예산 잔액	향후집행 예정액	전용예산	전용후 예산현액	비고
항	세항	목	세목	(A)	(B)	(C=A±B)	(D)	(E=C-D)	(F)	(G=F-E)	(H=C+G)	
												증액 예산
												감액 예산

예산전용사유 (산출근거 명시 및 증빙자료 첨부)

○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유

-

○ 감액예산을 전용재원으로 사용가능한 사유(향후 감액예산이 부족하여 역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)

-

< 작성방법 >

- 예산액(A) : 해당 세목에 대한 당초 예산을 기재
- 전용 등 증감액(B) : 해당 세목에 대하여 기존에 실시한 전용 등 증감이 있는 경우 기재
- 예산현액(C) : 해당 세목에 대한 예산현액 기재
- 집행액(D) : 해당 세목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기재(품의액이나 지출액이 아님)
- 예산잔액(E) : 해당 세목에 대한 현재 예산잔액 기재
- **향후집행예정액(F) : 해당 세목에 대한 향후집행예정액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을 반드시 첨부(별지 제4호 서식 참조)**
- 전용예산(G) : 해당 세목에 대한 전용예산을 기재하고,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
- 전용후예산(H) : 해당 세목에 대한 전용후예산 기재

< 붙임3 >

추가경정 예산 요구서

가. 수입예산

(단위:천원)

과		목		예산현액(A)		추경예산(B)		추경후 예산(C)=(A±B)	
항	세항	목	세목	금액	내역	금액	내역	금액	내역

나. 지출예산

(단위:천원)

과		목		예산현액(A)		추경예산(B)		추경후 예산(C)=(A±B)	
항	세항	목	세목	금액	내역	금액	내역	금액	내역

*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(근거법령, 관련규정등 명시)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

< 붙임4 >

세목별 증감조서

시행일자 : 20.

(단위:천원)

과 목				당초 예산액	자체증감액	증감후 예산액	증 감 사 유
항	세항	목	세목	(A)	(B)	(C)=(A±B)	
계							

- 세목별 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(산출근거 명시 및 증빙자료 첨부)
- 세목별 증감은 예산관리자 (경영지원부장) 전결사항으로 시행

< 붙임5 >

(00년도) 예산 지출원인행위부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			예산현액	원인행위일		건 명	채 주	지출원인액 (계약액)	집행잔액	비고
항	세항	목	세목		월	일					

- 지출원인행위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
- 지출원인행위부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자순으로 작성, 일일·월계·누계로 마감

<참고>

2020년 공사 위탁사업비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분류		단위사업명	예산액				
			'19예산	'20예산	증감액	증감률%	
위탁사업	1. 녹지사업	1. 녹색 숲 조성관리(공원녹지, 양묘온실, 꽃밭조성, 야생화단지 개방)	3,059	3,471	412	13	
		2. 제2매립장 수림대 조성	1,557	1,604	47	3	
		3. 골프장 수목 유지관리	840	865	25	3	
		4. 골프장(보완식재) 조경작업	774	797	23	3	
	2. 문화사업	1. 드림파크문화축제(가을나들이) 개최 ※ 상생기금 '19년 732(백만원) '20년 769(백만원)포함	900	927	27	3	
		2. 시민문화교실 운영 ※ 상생기금 190(백만원) 전액	230	230	0	0	
		3. 시민체육시설 운영 ※ 상생기금 278(백만원) 전액	335	363	28	8	
	3. 코스관리	1. 드림파크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※ 상생기금 3,627(백만원) 전액	4,175	4,389	214	5	
		2. 골프코스 개선사업(부등침하 등) ※ 상생기금 248(백만원) 전액	300	300	0	0	
			합 계(캠핑장, 승마장 별도공사 제외)	12,170	12,946	776	6